

한국고전학연구소 규정

(제정 2011. 4. 25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부설 한국고전학연구소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고전학 연구 전반에 대한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며,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, 한국 문화콘텐츠 자원 확충 과 고전번역 및 한국학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국고전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4.9.>

제3조(구분) 연구소는 본교 부설연구소 설치규정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화연구소로 구분하여 관리·운영한다. <개정 2015.4.9.>

제4조(위치)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.

제5조(사업) 연구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고전 자료의 번역 및 수집
2. 한국학 진흥을 위한 학술·연구활동
3. 고전학 발전을 위한 권역별·분야별 협력망 구축
4. 국내·외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
5. 시민 교육 및 답사프로그램 운영
6. 학술지 및 번역서, 연구소 소식지 발간
7.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(HK+) 연구단의 운영 <신설 2018.6.1.>
8.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2장 조직과 임원

제6조(조직)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
1. 연구소장 : 1명 <개정 2015.4.9.>
2. 간 사 : 2명 이내 <개정 2015.4.9.>
3. 감 사 : 3명 이내 <개정 2015.4.9.>
4. 연구원 <개정 2018.6.1.>
5. 연구인력: 약간 명 <개정 2018.6.1.>
6. 연구소지원인력: 약간 명 <개정 2018.6.1.>
7. 운영위원 : 10명 이내 <개정 2015.4.9.>

제7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5.4.9.>

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국책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 종료일

까지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9.>

제8조(간사 및 감사) ① 간사 및 감사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
②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총무 업무를 담당한다.

③ 간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연구부서) ①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연구실을 두며, 필요시 별도의 전문연구소를 둘 수 있다.

1. 고전번역실

2. 사료연구실

3. 교육기획실

② 제1항의 연구부서에는 연구실장을 둘 수 있다.

1. 연구소의 실장은 소장이 임명한다.

2. 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 연구소에 인문한국플러스(HK+) 연구단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(HK+) 연구단 운영 규정」에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8.6.1.>

제10조(연구요원) ① 연구인력은 연구원과 협력하여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용역사업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② 연구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교수

2. 박사후연구원

3. 특별연구원

4. 연구조원

5. 연구보조원

[본조개정 2018.6.1.]

제11조(연구소지원인력) ① 연구소는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조교 등의 연구소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소지원인력은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.

[본조개정 2018.6.1.]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12조(설치 및 구성) ① 연구소의 운영, 정책,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5.4.9., 2020.4.1.>

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9.>

④ 위원 중 1명 이상은 HK교수 중에서 위촉한다. <신설 2020.4.1.>

제13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

①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

② 연구과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

- ③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- ④ 연구부서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⑤ 전문연구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
- ⑥ 규정 개·폐에 관한 사항
- ⑦ 감사 선출
- ⑧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4조(소집과 의결) ①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소속 연구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연구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5.4.9.>

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재정

제15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간접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구소 사업 등에 의한 수입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[본조개정 2018.6.1.]

제16조(예산 및 결산) ① 연구소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연구소장이 행하고,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.

제5장 감사

제17조(감사) 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구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직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구소의 예산집행, 기자재 구매, 사업 진행내용 등 연구소가 1년 동안 수행한 제반 업무에 대해 조사·평가한다. <개정 2015.4.9.>

③ 감사는 3명 이내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5.4.9.>

④ 감사 결과는 문건으로 작성하여 산학연구지원실에 통보한다.

⑤ 감사는 임무 완수와 동시에 그 기능이 정지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